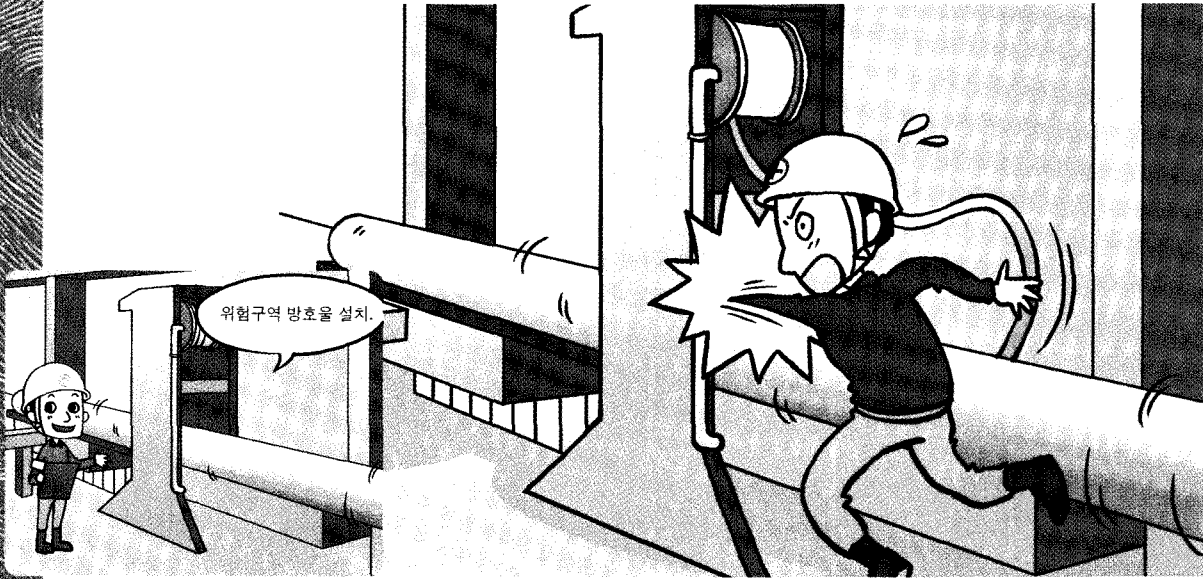


강관 교정기 작업 중 협착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 생산품 : 강관 | 기인물 : 교정기 | 재해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생산부 대구경 교정기 작업 중 교정기 상단에 설치된 에어호스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이던 강관에 피재자의 상체가 말리면서 교정기의 롤과 강관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생산부 대구경(12-외경 318.5mm, 길이 6m) 교정기 7호기 작업 중 교정기 상단에 설치된 에어호스가 늘어져 있어 에어호스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이던 강관에 상체가 말리면서 교정기의 롤과 강관사이에 피재자의 몸이 협착되어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이송도중 과다 출혈 및 장파열로 피재자가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발생원인

- (1) 교정기 상단에 에어호스 설치

- (2) 운전 중인 상태에서 위험구역에 접근
- (3)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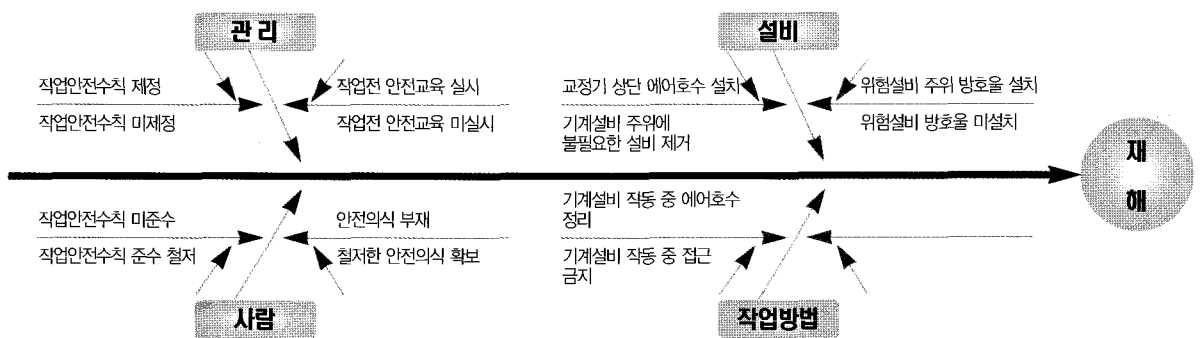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기계설비 주위 불필요한 설비 제거
- (2) 위험구역 방호울 설치
- (3) 작업안전수칙 준수 철저

4. 범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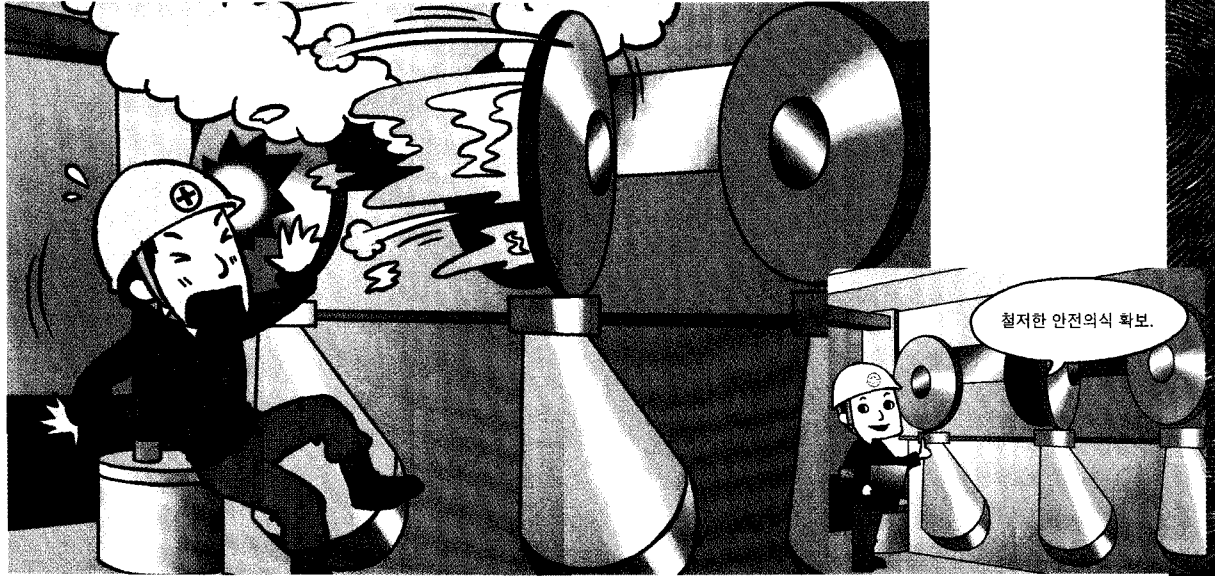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압기 청소작업중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폭발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 생산품 : 섬유임가공 | 기인물 : 고압기 | 재해유형 : 폭발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부상 1명



1. 재해발생개요

5개의 볼트를 안전하게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성소다와 과산화수소를 과다투입, 순간적인 승온, 승압으로 폭발하여 고온의 물이 비산되어 피재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작업교대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고압기 세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외통문에 부착되어 있는 5개의 볼트를 안전하게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성소다와 과산화수소를 과다투입, 순간적인 승온(약 100℃), 승압으로 고압기가 폭발, 외통문이 비산되면서 고온의 물이 피재자와 접촉 피재자가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발생원인

- (1) 근로자의 안전의식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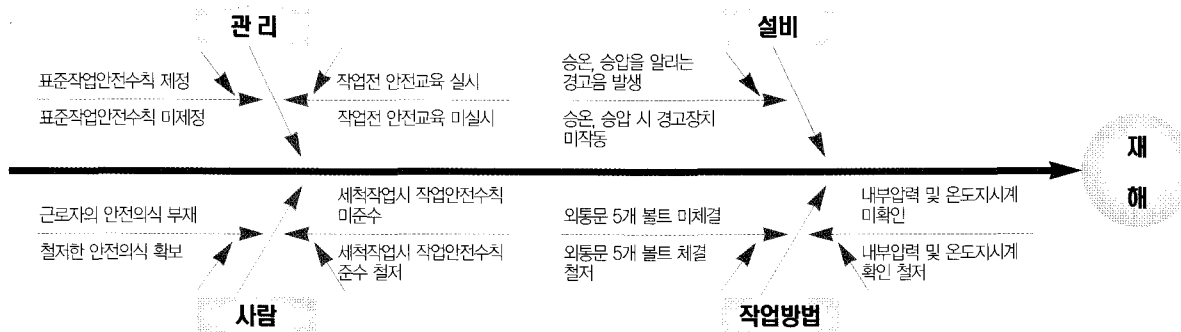
- (2) 가성소다 및 과산화수소 과다 투입
- (3) 외통문 볼트 미체결

나. 예방대책

- (1) 근로자의 안전의식 철저
- (2) 가성소다 및 과산화수소 소량 투입
- (3) 외통문 볼트 안전하게 체결 후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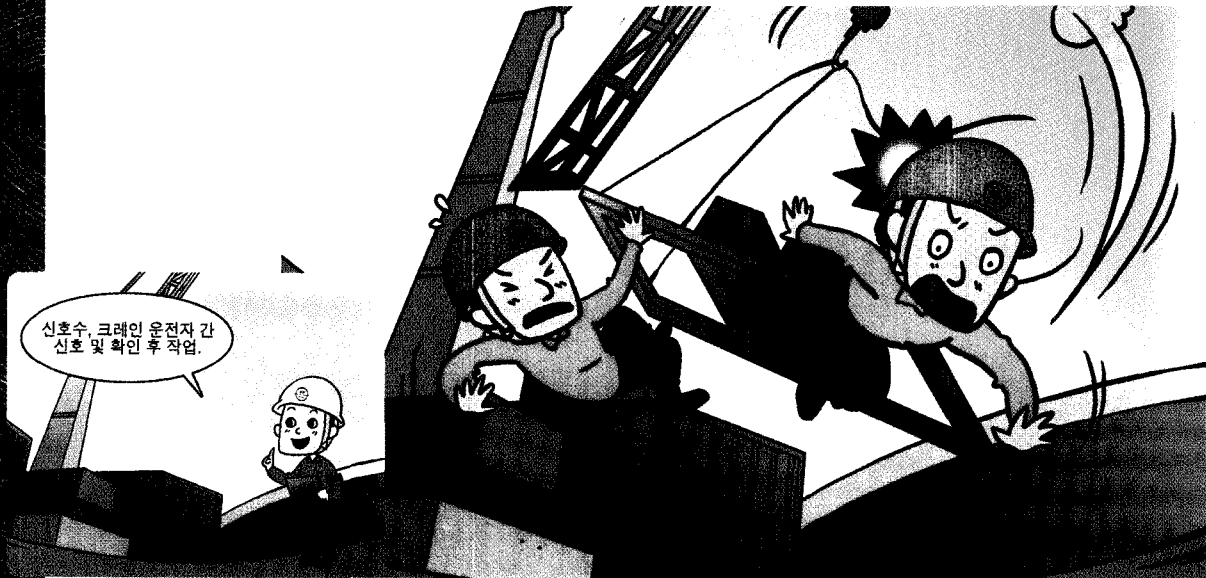
4. 범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컨테이너 선적작업 중 수동 스프레다에서 추락

* 업종 : 항만하역업 | 생산품 : 컨테이너 선적작업 | 기인물 : 하버크레인 | 재해유형 : 추락 | 피해정도 인적 사망 2명



1. 재해발생개요

하버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수동 스프레다로 선적작업 중 스프레다가 세레가이드 빔에 걸려 스프레다의 와이어로프 1개가 파단 되어 탑승 작업 중이던 피재자 2명이 추락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하버크레인으로 선박 홀드창 내 1단선적 후 스프레다를 올리던 중 세레가이드 빔에 걸려 스프레다를 지지하던 4개의 와이어로프 중 1개가 파단 되어 스프레다에 타고 있던 피재자 2명이 크레인의 상승 장력에 튕겨 8m 바닥 선박 홀드 창 내부에 1명, 1단 적하된 컨테이너 위에 1명이 추락하여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재자 2명 모두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발생원인

- (1)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자 신호 부적합
- (2) 수동 스프레다 사용
- (3) 작업자 안전벨트 미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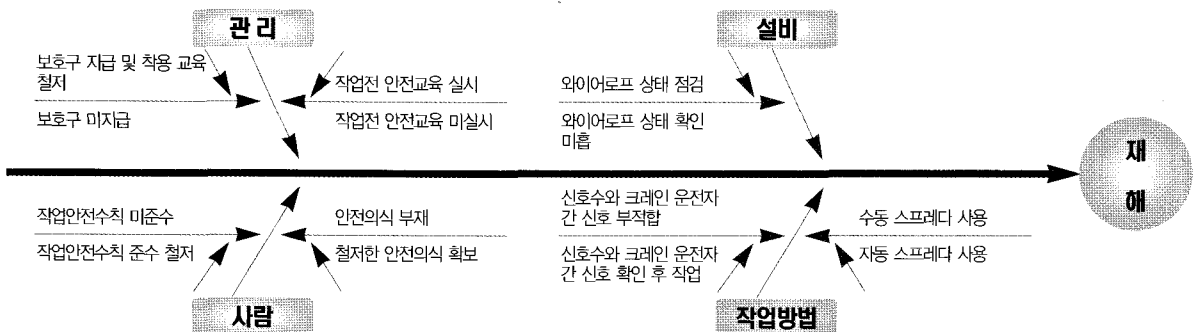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자 간 신호 확인 후 작업
- (2) 자동 스프레다 사용
- (3)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철저

4. 범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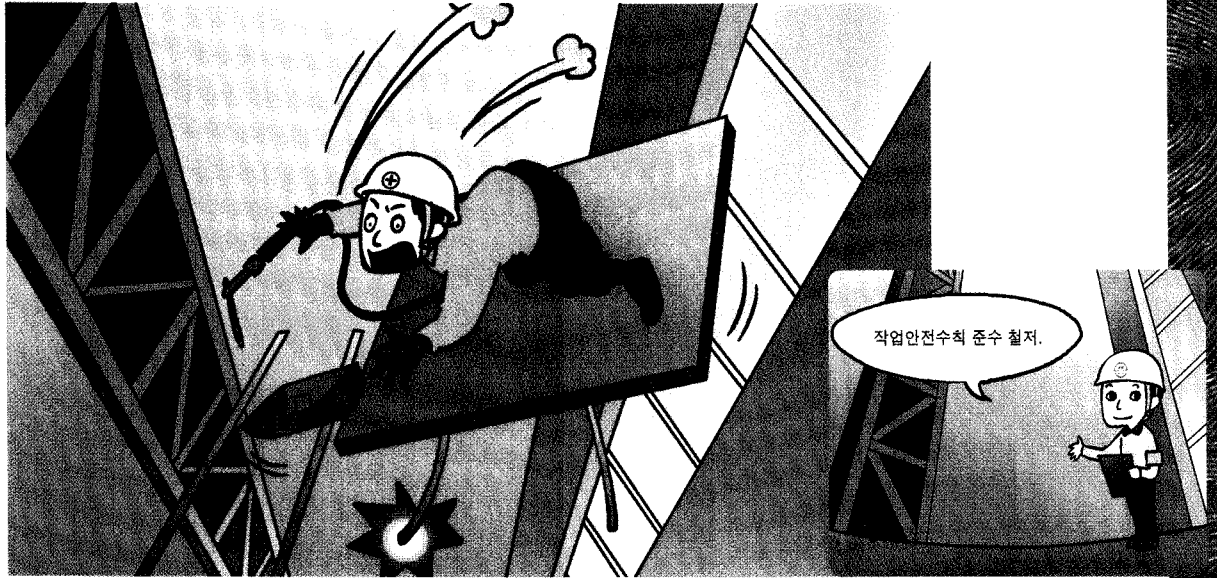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발판 지지용 철근 절단중 추락

* 업종 : 건설업 | 생산품 : 건축 | 기인물 : 작업장 바닥 | 재해유형 : 추락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엘리베이터 피트내부에 설치된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합판 위에서 작업중 철근이 절단되면서 피재자가 17m 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엘리베이터 피트내부 수직통로를 이용한 시멘트벽돌 운반작업을 위해 엘리베이터 피트내 설치된 철근의 절단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근에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합판, t=12mm) 위의 철근이 절단되면서 철근 상부의 작업발판 위에 있던 피재자가 17m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발생원인

(1) 피트내 철근절단 작업방법 불량

(2)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3)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나. 예방대책

(1) 철근절단 작업 시 외부에서 작업

(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3) 작업안전수칙 준수 철저

4. 범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